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96.

제출자 : 구미시장

1. 의결주문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 안 이 유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 14789호 '95.10.19)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과 부합되지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 난립으로 농촌 지역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뿐만아니라 상수원 및 하전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정하고자함.

3. 주 요 골 자

○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위한 제한지역의 지정 목적제시

○ 실치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

-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와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수도 취수장 취수구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
-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농어촌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시행 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지하수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면대책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녹장호소의 수질보전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먹는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 학교 주변으로서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군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농어촌 생활용수 양반관정이나 주요 저수지(저수량 10만톤이상) 상류 500미터 이내
- 일단의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개발된 지역 주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기타 시장이 지역실정을 판단하여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별도로 고시하는 지역

○ 설치제한 고시지역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안)제3조의 제한지역외 제한이 필요한지역을 고시할수있는 근거를 마련
- 제한지역 고시를 위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근거 마련

○ 거리의 환산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취락미음의경우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의 내지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기타의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3. 내 용 : 불입(안) 참조

4. 법적근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5.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입법예고 공고기간 : '96. 8.24 ~ '96. 9.13 (20일간))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들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한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의 선량한 마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 오염 등으로 자연환경을 해칠우려가 있는 입소시설의 설치 행위등을 제한함으로써 전전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6규정에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제한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수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수도법 제5조 규정에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와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수도 취수장 취수구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이내
- 2.하천법 제2조 규정에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 3.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

4. 농어촌상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시행 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
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6. 지하수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
9.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10. 먹는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11.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귀락마을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12.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13. 학교 주변으로서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14.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군도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
15. 농어촌 생활용수 일반관정이나 주요 저수지(저수량 10만톤이상) 상류 500미터이내
16. 일단의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개발될 지역주변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17. 기타 시장이 지역실정을 판단하여 공익상, 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별도로 고시하는 지역

제4조(설치제한고시지역)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제3조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지역을 고시할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하는 때에는 제한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 또는 해제할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의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은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의대상 지역의 주민 대표 3인 이내
2. 환경, 도시문화 전문 교수 3인 이내
3. 편제 공무원 3인 이내

④ 제2항 규정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⑤ 실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읍,면,동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 (행정구역도 표시)
3. 행위의 제한 내용등

제5조(거리의환산) 설치제한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지역, 지구, 구역은 1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 2.권리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 대지성계로부터의 직선거리로 한다.
- 3.기타의 경우는 부자성계로부터의 직선거리로 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내에서 석촌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숙박업소, 석촌집객업소), 토지이용권변경등행위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등을 얻은자 또는 사업을 착수한자에 대하여는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여도 본 조례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